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노 숙 인 등 의 복 지 및 자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개정된 의료법 및 의료급여 법령의 체제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제5조 제2항 제1호)

나.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제5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9조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제3항,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의료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3) 행정규제 : 해당없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또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 기준 등) ① (좌동) ② (좌동)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u>제1호</u> 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일 것 ③ (좌동) ④ (좌동)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신청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u>제3항</u> 또는 제27조 <u>제3항</u>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립지원과	
연락처	(044) 202-3073 (044) 202-3076